

1. 개정이유

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「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“제5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”를 삭제함(안 제9조제1호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실시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규제의 재검토)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5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: 2016년 1월 1일	<u><삭 제></u>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